

#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실시 시행세칙

제정 2014. 10. 12  
 개정 2014. 12. 09  
 개정 2015. 11. 23

## 1. 자격 인정 방법

- (1) 학회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및 제 경비를 납부하여 위원회가 필요한 심사를 시행한다.
  - ① 지원자는 임플란트 치료 10증례 자료집을 제출해야 한다.
    - 가. 증례기록지와 술전, 술후 임상사진 또는 방사선사진 첨부
  - ② 기존 인증의는 임상증례 보고는 면제하는 것으로 한다.
  - ③ 자격 신청서 제출 시에 평생회비 등 제반 경비 납부해야 한다.
    - 총 90만원 (평생회비 75만원, 심사비 10만원, 교부료 5만원)
    - 자격 취득 후 5년마다 갱신 시 재심사교부료 1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.
  - ④ 회비 면제자는 제반 경비를 65만원으로 한다.
- (2) 학회로부터 인정받은 우수임플란트임상의에게 자격증을 교부한다.
- (3) 자격증 발행일은 4월 1일과 10월 1일로 한다.

## 2. 자격 인정 기준

- (1) 대한민국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3년 이상 계속 회원이어야 한다.
- (2) 위원회 결의로 동등 자격을 받은 자는 별도로 정한다.
- (3) 상기 항 중에서 소정의 점수를 취득한 자로 최종 결정한다.
  - 그 갱신은 5년마다 실시한다.

## 3. 자격 기준

- (1) 학회 인정 점수 85점 이상 가진 자로 한다.
- (2) 평점 내용

분 류	내 용	단 위	취 득 점 수
학회 회원 기간	3년 이상	1년당	2점 (최대10점)
치료증례	임플란트 치료 10증례	1증례당	5점 (최대50점)
국내 학회 발표 <small>(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)</small>	심포지엄 연자	1회당	10점
	자유연제 연자		5점
	학술집담회 연자		5점
	본 학회 연수회 연자		5점
국외 학회 발표	임플란트 관련	1회당	10점
논문(학회지)발표 <small>(임플란트 관련 논문/ 임상증례 발표 포함)</small>	1인 단독	1회당	10점
	2인 공저		7점
	3인 공저		5점
	4인 이상 공저		3점
	총설 및 증례보고		3점

대학 강의	임플란트 관련 강의	1학기당	15점
본 학회 행사 참석	춘계,추계 학술대회	1회당	10점
	학술강연회,학술집담회		2점
	연수회	1일당	2점
국제학회 행사 참석 (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)	국제대회	1회당	5점

#### 4. 자격 상실

- (1) 본인이 자격 사퇴를 신청한 경우
- (2) 치과의사 면허를 상실한 경우
- (3) 학회 회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
- (4) 우수임플란트임상의의 갱신을 하지 않은 경우
- (5)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경우

#### 부 칙

- 1) 본 세칙 개정(2015.11.23)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우수임플란트임상의 보수교육에 관한 시행세칙

제정 2014. 10. 12  
개정 2015. 02. 10  
개정 2015. 11. 23

**제1조 (목적)** 본 세칙은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인정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제도에 관한 규정 중 보수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대상)** 보수교육의 대상은 치과의사로서 본 학회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을 취득하거나 갱신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.

**제3조 (주관)** 보수교육은 학회장의 감독 하에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가 주관 실시한다.

**제4조 (교육기관)**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.

- (1)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
- (2) 대한치과이식임플란트학회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관 및 단체

**제5조 (등록비)** 보수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교제대금, 강사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**제6조 (평점)**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 갱신에 필요한 자는 5년 동안 50점을 득해야 하며, 이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.

- (1) 보수교육

분 류	내 용	단 위	갱 신 점 수
<b>국내 학회 발표</b> <small>(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)</small>	심포지엄 연자	1회당	10점
	자유연제 연자		5점
	학술집담회 연자		5점
	본 학회 연수회 연자		5점
<b>국외 학회 발표</b>	임플란트 관련	1회당	10점
<b>논문(학회지)발표</b> <small>(임플란트 관련 논문/ 임상증례 발표 포함)</small>	<b>1인 단독</b>	<b>1회당</b>	<b>10점</b>
	<b>2인 공저</b>		<b>7점</b>
	<b>3인 공저</b>		<b>5점</b>
	<b>4인 이상 공저</b>		<b>3점</b>
	<b>증설 및 증례보고</b>		<b>3점</b>
<b>본 학회 행사 참석</b>	춘계,추계 학술대회	1회당	10점
	학술강연회,학술집담회		2점
	연수회	1일당	2점
<b>국제학회 행사 참석</b> <small>(본학회가 인정하는 학회에서 임플란트와 관련된 내용)</small>	국제대회	1회당	5점

- (2) 학술대회 참가자는 우수임플란트임상의 보수교육 교육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학술대회 참가자를 말한다.
- (3) 연수회 및 학술집담회는 본 학회에서 주관 또는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.
- (4)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강좌는 심사하여 점수를 부여할 수도 있다.

**제7조 (기록보관)** 위원회는 보수교육에 관한 제반서류를 8년간 보존하여야 한다.

**제8조 (보칙)** 경과 조치로 다음과 같이 우수임플란트임상의를 부여한다.

- (1) 비회원은 경과규정에 의해 2015년 춘계학술대회 이전에 본 학회에 가입하면 우수임플란트임상의의 지원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.
- (2) 본 학회의 기존 인증의 및 장기회원(기준: 5년간 회비납부 회원)들도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신청하면 우수임플란트임상의 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.
- (3) 본 보칙의 경과 조치는 2015년 9월 30일로 만료한다.

## 부 칙

제1조 본 세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 본 세칙 개정(2015.11.23)의 적용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**